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가단50773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4 지분에 관하여 2020.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6,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31685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12. 'E은 원고에게 7,783,256원 및 그 중 2,003,810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6.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1997. 1. 30. E의 어머니이면서 당시 피고의 시어머니였던 F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F가 2010. 3. 26.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그에 따라 F의 아들인 E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2/2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라. E은 2020. 4. 8.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1982. 11. 27. E과 혼인하였다가 2021. 8. 25. 재판상 이혼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드단61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E이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며, 이 사건 증여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를 이 사건 지분의 가액 상당인 6,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E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재산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피고와 E 사이의 공동재산의 분배,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거나 단지 재산분할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6,250,000원 상당이다.
- ② E은 피고와 혼인기간 대부분을 가출한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를 기준으로 하여도 10년 이상 가출한 상태였다.
- ③ 피고는 E이 가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 ④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E과 피고의 재산상 이혼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E의 장기간 동안의 가출로 인한 것으로 보여 E은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부동산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남 목포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전남 목포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건물의 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84.72 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남 목포시 대8286.8m²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1. 소유권 대지권 8286.8분의 47.48

